

# 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서 개정대비표

(구매기업용-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 및 장래채권 양도방식용)

## 1. 주요 개정 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<p><b>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서(구매기업용)</b></p> <p>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, 포괄 승낙방식,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 있는 경우)</p> <p>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과 _____(이하 "구매기업"이라 하고, "은행"과 합쳐 "양 당사자"라 합니다)는 상호협력하여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은행의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」 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기업 상호지원협약(이하 "이 협약"이라 합니다)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,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<u>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.</u></p> <p><b>제1조 (목적)</b> (기재생략)</p> <p><b>제2조 (협력기업의 정의)</b> 이 협약에서 "협력기업"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(용역 포함, 이하 같다)을 납품하는 거래기업 중 은행으로부터 이 협약과 관련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담보조로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(이하 "외상매출채권"이라 한다)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은행과 체결한 기업과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 없이 채권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.</p> <p><b>제 3조 (업무의 방법)</b> ① (기재생략)</p>	<p><b>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서</b></p> <p>(구매기업용-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 및 장래채권 양도방식용)</p> <p>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과 _____(이하 "구매기업"이라 하고, "은행"과 합쳐 "양 당사자"라 합니다)는 상호협력하여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은행의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」 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기업 상호지원협약(이하 "이 협약"이라 합니다)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,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<u>과 금융결제원의 「B2B업무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」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.</u></p> <p><b>제1조 (목적)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2조 (협력기업의 정의)</b> 이 협약에서 "협력기업"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(용역 포함, 이하 같다)을 납품하는 거래기업 중 은행으로부터 이 협약과 관련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담보조로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(이하 "외상매출채권"이라 한다)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대출약정을 은행과 체결한 기업과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.</p> <p><b>제 3조 (업무의 방법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	용어 수정  준용 약관 추가  용어 수정

<p>② 협력기업은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, 외상매출채권의 <b>지급기일</b> 전에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(with recourse)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(이하 “전자외담대”라 합니다)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없이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은행의 지급대행을 통하여 만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은행은 전자외담대가 실행된 경우에 외상매출채권의 <b>결제일에</b> 결제대금으로 전자외담대를 상환처리하며,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구매기업은 은행에 대하여 결제대금의 변제의무를, <b>판매기업은</b> 은행에 대하여 전자외담대의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.</p>	<p>② 협력기업은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, 외상매출채권의 <b>만기일</b> 전에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(with recourse)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(이하 “전자외담대”라 합니다)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없이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은행의 지급대행을 통하여 만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은행은 전자외담대가 실행된 경우에 외상매출채권의 <b>만기일에</b> 결제대금으로 전자외담대를 상환처리하며,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구매기업은 은행에 대하여 결제대금의 변제의무를, <b>협력기업은</b> 은행에 대하여 전자외담대의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.</p>	용어 수정  용어 수정
<p><b>제4조 (기본 협약사항)</b></p> <p>① (기재생략)</p> <p>② (외상매출채권의 <b>양도</b>)</p> <p>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, 은행은 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, 협력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합니다. 이에 대해 구매기업은 제 4 항에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</p>	<p><b>제4조 (기본 협약사항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외상매출채권의 <b>양도 및 양도승낙</b>)</p> <p>1.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, 은행은 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, 협력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합니다. 이에 대해 구매기업은 제 4 항에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</p> <p>2. 구매기업과 협력기업 사이에 체결한 물품 납품 계약 등에서 협력기업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, 구매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협력기업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행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</p>	용어 수정  호 번호 신설
<p>(신설)</p>		법무법인 검토  의견 반영을 위한 후 신설
<p>③ (장래채권이 매 건별로 확정되었을 경우의 통보)</p> <p>1.~2. (기재생략)</p> <p>3. 외상매출채권의 <b>지급기일은</b> 발행일(통보일)로부터 180일 이내에서 정하기로 합니다.</p>	<p>③ (장래채권이 매 건별로 확정되었을 경우의 통보)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외상매출채권의 <b>만기일은</b> 발행일(통보일)로부터 180일 이내에서 정하기로 합니다.</p>	용어 수정
<p>④ (기재생략)</p> <p>1. <b>구매기업이</b>, 협력기업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2.~3. (기재생략)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협력기업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2.~3. (현행과 같음)</p>	

<p>4.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<b>압류, 가압류가</b> 있거나 협력기업이 제3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경우</p> <p>5~6. (기재생략)</p> <p>⑤ (전자외담대의 취급 및 제한)</p> <p>은행은 제3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협력기업별 통보금액 범위내에서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를 취급하기로 합니다. 그러나 동 협력기업이 「신용정보관리규약」상 '연체 등' 정보가 등록되거나 기타 은행의 내규상 여신의 비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산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은행은 즉시 그 사실을 구매기업과 협력기업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⑥ (양도받은 채권의 관리 및 통지)</p> <p>구매기업은 은행이 양도 받은 협력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성실히 관리하여 은행의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금 채권보전에 적극 협조하고, 협력기업의 채권자가 위 외상매출채권을 <b>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다거나</b> 협력기업으로부터 제3자에게 위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양도 받은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⑦ (외상매출채권의 지급)</p> <p>1. 구매기업은 제3항에 따라 은행에게 전산으로 통보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그 명세에 기재된 지급기일에 은행의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그 명세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입금하기로 합니다.  <b>(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)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2 1214 1006 1294"> <thead> <tr> <th>예금주</th><th>예금주 <u>사업자번호</u></th><th>계좌번호</th></tr> </thead> </table> <p>2. 만기도래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은 별도의 청구서 없이 인출하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분을 우선 변제하고, 미취급 분은 접수일자 순,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.</p>	예금주	예금주 <u>사업자번호</u>	계좌번호	<p>4.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<b>(가)압류가</b> 있거나 협력기업이 제3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경우</p> <p>5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전자외담대의 취급 및 제한)</p> <p>은행은 제3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협력기업별 통보금액 범위내에서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를 취급하기로 합니다. 다만, 동 협력기업이 「신용정보관리규약」상 '연체 등' 정보가 등록되거나 기타 은행의 내규상 여신의 비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산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은행은 즉시 그 사실을 구매기업과 협력기업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⑥ (양도받은 채권의 관리 및 통지)</p> <p>구매기업은 은행이 양도 받은 협력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성실히 관리하여 은행의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금 채권보전에 적극 협조하고, 협력기업의 채권자가 위 외상매출채권을 <b>(가)압류하였거나</b> 협력기업으로부터 제3자에게 위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양도 받은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⑦ (외상매출채권의 지급)</p> <p>1. 구매기업이 이 협약에 따라 은행에게 통보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구매기업 및 협력기업 간의 법률관계와 무관하게,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변제의무를 부담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, 그 명세에 기재된 만기일에 은행의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그 명세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.  <b>[주]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]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35 1214 1949 1294"> <thead> <tr> <th>예금주</th><th>예금주 <u>사업자등록번호</u></th><th>계좌번호</th></tr> </thead> </table> <p>2.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동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,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</p>	예금주	예금주 <u>사업자등록번호</u>	계좌번호	<p>용어 일부 삭제</p> <p>용어 수정</p> <p>용어 수정</p> <p>법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한 문구 수정</p> <p>용어 수정</p> <p>업무절차에 따른 문구 수정</p>
예금주	예금주 <u>사업자번호</u>	계좌번호						
예금주	예금주 <u>사업자등록번호</u>	계좌번호						

<p>3.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동대출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</p> <p>4. 지급기일에 구매기업이 제1호에서 규정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협력기업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협력기업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 <p>5. 협력기업의 전자외담대 신청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입금받은 채권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별도의 수수료를 공제함이 없이 전호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.</p> <p>6. 은행은 “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” 없이 채권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그 외상매출채권 처리에 관한 책임이 구매기업에게 있기로 하는 조건으로 제2호에 따라 지급대행업무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.</p>	<p>3. 만기일이 도래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은 별도의 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전자외담대 취급 분을 우선 변제하고, 미취급 분은 접수일자 순,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.</p> <p>4. 협력기업의 전자외담대 신청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입금 받은 채권대금을 그 만기기일에 별도의 수수료를 공제함이 없이 제 3 호의 방법으로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.</p> <p>5. 만기일에 구매기업이 제 1 호에서 규정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협력기업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 3 호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 <p>6.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처리 중 결제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제 3 호에서 정한 결제순서에 해당하는 건 별 외상매출채권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며 결제계좌 잔액보다 금액이 적은 채권이 없을 경우에는 결제되지 않습니다.</p>	<p>상동 상동 상동 상동</p>
<p>(8) (외상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)</p> <p>구매기업이 제3항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 명세를 전산으로 통보한 경우,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하자, 전산조작오류, 기타 사유를 이유로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. 그러나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그에 기초하여 제5항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를 실행한 후에는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, 통보 당시의 외상매출채권 명세에 따른 금액을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.</p> <p>(9) (외상매출채권 지급채무의 범위)</p> <p>제3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외상매출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를 실행한 이후에는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의 <u>압류 또는 가압류의</u> 통지를 받거나, 협력기업으로부터 제3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거나, 세무서 또는 조세공과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받는 등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상매출채권의</p>	<p>(8) (외상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)</p> <p>구매기업이 제3항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 명세를 전산으로 통보한 경우,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하자, 전산조작오류, 기타 사유를 이유로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. 다만,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그에 기초하여 제5항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를 실행한 후에는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, 통보 당시의 외상매출채권 명세에 따른 금액을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.</p> <p>(9) (외상매출채권 지급채무의 범위)</p> <p>제3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외상매출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를 실행한 이후에는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의 <u>(가)압류의</u> 통지를 받거나, 협력기업으로부터 제3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거나, 세무서 또는 조세공과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받는 등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</p>	<p>용어 수정 용어 일부 삭제</p>

지급기일에 은행에게 그 대금을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.								
(⑩) (기재생략)								
<b>제5조 (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,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)</b>								
(①) (기재생략)								
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	금	원						
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	금	원						
이자율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정금리	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연( )%				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금리( ) + ( )%				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금리( ) + 기간별가산금리						
		1- <u>1</u> <u>5</u> 일	16- <u>4</u> <u>5</u> 일	46- <u>7</u> <u>5</u> 일	76- <u>1</u> <u>0</u> 일	106- <u>1</u> <u>8</u> 일		
		( ) %	( ) %	( ) %	( ) %	( ) %		
지연배상금률	지연배상금률은 제 5 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. 단, 최고지연배상금률은 연 %로 합니다.			지연배상금률은 제5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연체가산율 ( )%를 더하여 결정하며, 최고 연( )%로 합니다.				
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	연체기간이 ( )개월 이하인 경우 : 연 % 연체기간이 ( )개월 이하인 경우 : 연 % 연체기간이 ( )개월 초과인 경우 : 연 % .			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				
변제방법	개별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.			변제방법 개별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.				
※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지정계좌 입금 분은 당일 중 변제처리 되지 않을 수 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
※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지정계좌 입금 분은 당일 중 변제처리 되지 않을								
		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은행에게 그 대금을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.		용어 수정				
(⑩) (현행과 같음)								
<b>제5조 (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,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)</b>								
(①) (현행과 같음)								
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	금	원						
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	금	원						
이자율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정금리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금리( ) + 가산금리( )%				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연( )%						
지연배상금률	지연배상금률은 제5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연체가산율 ( )%를 더하여 결정하며, 최고 연( )%로 합니다.			여신거래약정서 (기업용)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				
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	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							
변제방법	개별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.							
※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지정계좌 입금 분은 당일 중 변제처리 되지 않을								
수 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
		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은행에게 그 대금을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.		이자율 적용 기준 반영				
(⑩) (현행과 같음)								

<p>수 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② 구매기업은 제1항에 의해 대출 취급된 외상대출채권에 대해 변제의무를 지며, <b>지급기일에</b>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변제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/p>	<p>② 구매기업은 제1항에 의해 대출 취급된 외상대출채권에 대해 변제의무를 지며, <b>만기일에</b>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변제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/p>	<p>문구 수정</p>
<p><b>제6조 (협력기업의 대출신청 방법 및 대상)</b></p> <p>①~② (기재생략)</p> <p>③ 은행의 <b>전산상의 사유로</b> 해당일에 대출을 취급치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영업일에 대출취급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④ (기재생략)</p>	<p><b>제6조 (협력기업의 대출신청 방법 및 대상)</b>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은행의 <b>전산 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로</b> 해당일에 대출을 취급치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영업일에 대출취급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문구 수정</p>
<p><b>제7조 (한도 감액, 정지)</b></p> <p>(기재생략)</p>	<p><b>제7조 (한도 감액, 정지)</b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	
<p><b>제8조 (협약서 효력)</b></p> <p>①~② (기재생략)</p> <p>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해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협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외상대출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의 <b>결제일까지</b>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④ <b>이 협약과 「전자방식 외상대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,</b> 이 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「전자방식 외상대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</p>	<p><b>제8조 (협약서 효력)</b>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해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협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외상대출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의 <b>실제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</b>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④ <b>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상충되는 사항은</b> 이 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「전자방식 외상대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제 18 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</p>	<p>법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한 문 구 수정</p>
<p><b>제 9 조(관할법원의 합의) ~제 10 조 (기타 특약사항)</b></p> <p>(기재생략)</p>	<p><b>제 9 조(관할법원의 합의) ~제 10 조 (기타 특약사항)</b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	
<p>20 년 월 일</p> <p><b>[은행]</b> 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(인) 기업명 : _____(인) 주 소 :</p>	<p>20 년 월 일</p> <p><b>[구매기업]</b> 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(인) 기업명 : _____(인) 주 소 :</p>	

--	--	--

2. 개정 시행일 : 2019년 5월 30일

3.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: 적용